

예산총칙

2021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7,670,397	14,030,112
일반회계	356,035,547	10,681,066
특별회계	111,634,850	3,349,046
공기업특별회계	3,318,631	99,559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3,318,631	99,559
기타특별회계	108,316,219	3,249,48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970,022	599,10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7,929	19,738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36,160,108	1,084,80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148,295	154,449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8,858,155	565,745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1,469,000	44,07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3,194,208	395,826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923,681	27,710
의령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1,810,121	354,304
의령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4,700	3,74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33,558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5,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